##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48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 박성민·조경태·김위상

박정하 • 이헌승 • 서일준

이인선 · 김상욱 · 박수민

구자근 의원(10인)

##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 유형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에 포함 하여 입법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자전거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또한,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처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자전거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을 규정하는

한편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시·군·구는 안전하고 원활한 자전거의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 주차구역·주차금지 구역 등 자전거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 다. 무단방치된 자전거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석이 모호한 "통행 방해"의 용어를 삭제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조례에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각한 자전거의 매각대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 마.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명의대여의 금지, 양도·양수, 상속 및 휴업·폐업 등을 규정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 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의 주차시설, 충전소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를 자전거 대여사업자에게 요청할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6).
- 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여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자전거 대여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7).
- 아. 자전거 대여사업자가 자전거 대여사업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8).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2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 치(驅動裝置)가 있을 것
- 나. 전동기를 장착하고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서,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 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 함한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다. 전동기와 페달을 장착하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것으로서,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 5. "자전거 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3(자전거의 주차 및 주차금지) ①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안전하고 원활한 자전거의 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정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경찰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정한 자전거의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자전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 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매각한 자전거의 매각대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자전거의 이동·보관·매각 및 그 밖에 처분에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공공장소"를 "공공장소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소"로 하고,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을 "방치하여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 항에 따라 매각한 자전거의 매각대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에는 그 소유자에게 자전거의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처분에 소 요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기자전거"를 "제2조제1호나목의 자전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자전거의 통행방법 및 이용자 준수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4장(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 자전거 대여사업

- 제23조의2(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 및 휴업·폐업) ① 자전거 대여사업(공영자전거 대여사업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자전거 대여사업자"라 한다)가 신고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하여야 한다.
  - ③ 자전거 대여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의3(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자전거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전거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 제23조의4(자전거 대여사업의 승계) ① 자전거 대여사업자가 그 사업 또는 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 인이 그 자전거 대여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자전거 대여사 업자의 사업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자전거 대여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전거 대여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의5(운전자격의 확인) ① 자전거 대여사업자는 제2조제1호나목 에 따른 자전거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② 자전거 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전거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다.
- 제23조의6(자전거 대여사업자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시설, 전기자전거 충전소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자전거 대여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의7(자료제출의 요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대여사업자에게 대여 현황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대여사업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3조의8(자전거 대여사업의 사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 1.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2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 대여사업자의 지위를 승

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사업경영을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9(과징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대여사업자가 제23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자전거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장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 징금은 해당 시·군·구에 귀속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1. 납세자의 인적사항

- 2. 사용목적
-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 금이나 구류, 과료(科料)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전거 대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전거 대여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까지는 제2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u>사람의 힘으로</u>	1 <u>다음 각 목</u>		
페달이나 손 페달을 사용하여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	건을 갖추고		
<u>와</u> 조향장치(朝享) 및 제동장			
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u>&lt;신 설&gt;</u>	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		
	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		
	<u>가 있을 것</u>		
<u>&lt;신 설&gt;</u>	나. 전동기를 장착하고 페달		
	(손 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서,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		
	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		
	지 아니하고 부착된 장치		
	의 무게를 포함한 전체 중		
	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 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 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 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 페달을 포함한 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 4. (생략)

것

다. 전동기와 페달을 장착하
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것으로서,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
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
지 아니하고 부착된 장치
의 무게를 포함한 전체 중
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 5. "자전거 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전거 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 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7조의3(자전거의 주차 및 주차 금지) ① 시·도 또는 시·군 ·구는 안전하고 원활한 자전 거의 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 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전거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 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정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경찰청 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자전거 의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자 전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 분을 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
장, 그 밖의 <u>공공장소</u>에 자전거
를 무단으로 <u>방치하여 통행을</u>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신 설>

제22조의2(전기기	자전거	운행	제한)
	전기지	-전거-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매각한 자전 거의 매각대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자전거의 이동·보관·매각 및 그 밖에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u>방치하여서는</u>----.

- ② (현행과 같음)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2항에 따라 매각한 자전 거의 매각대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에게 자전거의 이동·보관·매 각 및 그 밖에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의2(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u>(1)</u> -----

-----<u>제2조제1</u> 호나 목의 자전거----

<u><신 설></u> <신 설> -----.

②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자전거의 통행방법 및 이용자 준수사항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자전거 대여사업
제23조의2(자전거 대여사업의 신
고 및 휴업·폐업) ① 자전거
대여사업(공영자전거 대여사업
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려는 자
는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 대여 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자 전거 대여사업자"라 한다)가 신고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자전거 대여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신 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명의대여의 금지) 누구 든지 자전거 대여사업자의 대 여사업용 자전거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 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3조의4(자전거 대여사업의 승계) ① 자전거 대여사업자가 그 사업 또는 시설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에 따라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이그 자전거 대여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자전거 대여사업자의 사업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자전거 대여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 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전거 대여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5(운전자격의 확인) ① 자전거 대여사업자는 제2조제1 호나 목에 따른 자전거를 임차 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개인형 이동수단 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 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운전 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대여사업자는 제1항 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운전 자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 우에는 자전거를 대여하여서는

<신 설>

<신 설>

아니 된다.

제23조의6(자전거 대여사업자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시설, 전기자전거 충전소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자전거 대여사업자에게 요청할수 있다.

제23조의7(자료제출의 요청)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대여사업자 에게 대여 현황 등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대여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제23조의8(자전거 대여사업의 사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대여사업자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u><신</u>설>

있다.

- 1.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경우
- 2. 제2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 대여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처분기간 중 사업경영을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9(과징금) ① 시장·군수
 ·구청장은 자전거 대여사업자
가 제23조의8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
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
업정지 처분이 그 자전거 대여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
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
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

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 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장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행 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①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 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 수한 과징금은 해당 시·군· 구에 귀속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 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1. 납세자의 인적사항
- 2. 사용목적
-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 출금액

제5장 벌칙

제4장 벌칙

제24조(벌칙) (생 략)	제24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lt;신 설&gt;</u>	② 제23조의3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科
	料)에 처한다